성주군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대행기관 운영에 관한 조례안 검토보고서

1. 제 안 자 : 성주군수

2. 제정이유

○「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법」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인 성주군이 국가기관인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의 대행기관으로서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제도를 명시하고 관련 지원 체계의 제도화를 목적으로 함.

3. 주요내용

○ 목적 및 기능 (안 제1조 ~ 안 제3조)
○ 보조금 지원 및 정산보고 (안 제4조)
○ 인력 지원, 공공시설 이용 관련 사항 (안 제5조 ~ 안 제6조)
○ 포상 관련 사항 (안 제7조)

4. 참고사항

○ 관계법령 : 「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법」 제9조
「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법 시행령」 제3조 및 제30조의2
○ 기 타 : 조례안예고(2019. 4. 25 ~ 2019. 5. 15)

5. 검토의견

○ 본 제정조례안은 「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법」 및 동법 시행령에서 민주평화통일 자문회의의 사무 일부를 '지방자치단체'에서 대행 또는 위탁처리 할 수 있다고 규정함에 따라, 성주군이 그 사무의 일부를 대행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조례로 규정하여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사항을 명문화 하는 것으로써,

○ 법리 검토결과, 관련 상위법령에 위배되지 않고 자치법규 입안 심사기준에 합당하며, 전 국민의 염원인 평화통일과, 우리군 민주평화통일 자문회의 사무의 투명하고 효율적 운영을 위해 본 조례를 제정·시행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.